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57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박주민·강민정·강은미

고영인 · 김남국 · 김영배

김용민 · 김원이 · 김진애

김진표 • 김철민 • 김회재

류호정 • 맹성규 • 민형배

박광온 • 박영순 • 배진교

서동용 • 서영석 • 송영길

송재호 · 신정훈 · 신혂영

양경숙 • 양이원영 • 양정숙

오기형 · 오영환 · 용혜인

우원식 • 유정주 • 윤미향

윤재갑 · 윤후덕 · 이규민

이소영 · 이수진 · 이용빈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이은주 · 이재정 · 이정문

이타희 · 이학영 · 이형석

장경태·장혜영·전용기

전해철 · 정일영 · 조오섭

진성준 • 천준호 • 최강욱

최혜영·한준호·허 영

홍기원 · 홍정민 의원

(629]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진상조사, 현행 제도의 개혁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조사 업무필요시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결정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활동 완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활동기간이 매우 짧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인력이부족한 실정이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의 원인 규명 등에 난항을 겪은 사이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도과될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 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관을 둠(안 제6조의2 신설).
- 나. 위원회의 정원을 15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 다.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 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10항 신설).
- 라.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 간 동안 시효 진행을 정지함(안 제30조의2 신설).
- 마.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44호) 및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참사 관련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 1. 「형법」 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살인죄, 유기치사상죄, 선박매몰죄, 위증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당표시·광고 에 관한 죄
- 3. 가습기살균제사건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5조 관련 범죄
- 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6.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7. 「국가정보원법」 중 직권남용죄
- 8.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의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공 무원 직무 관련 범죄
-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조사관) ① 위원회에 제2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둔다.
 - ② 조사관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2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 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와 이와 관련하여 위원 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조사한다.
 - ③ 조사관의 임용 방법, 자격 요건, 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의3(사법경찰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가습기살균제사건 과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을 "두 차례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회의 정원 등)"을 "(위원회의 정원)"으로 하고, 제1항 중 "120명"을 "1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 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 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1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 중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을 지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4·1 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설립준비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각각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제48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 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 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 일체의 사본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 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 일체의 사본을 각 추모 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송부의 주체, 시 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 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 일체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활동기간이 진행 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 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
	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수사
	에 관한 사항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가
	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참
	사 관련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법」 중 업무상과실・중
	과실치사상죄, 살인죄, 유기치
	사상죄, 선박매몰죄, 위증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부당표시
	<u>· 광고에 관한 죄</u>
	3. 가습 살균제사건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 직무 관련
	<u>범죄</u>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신 설>

- <u>위한 특별법」 제45조 관련</u> 범죄
- 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u>죄</u>
- 6. 「해운법」, 「선원법」, 「선 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범죄
- 7. 「국가정보원법」 중 직권남 <u>용죄</u>
- 8.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의 책임 있는 국가기 관의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제6조의2(조사관) ① 위원회에 제 2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 상규명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둔다.
 - ② 조사관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22조에 따른 가습기살 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와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조사한다.
 - ③ 조사관의 임용 방법, 자격

<신 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이내에서 연장할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u>120명</u>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사법경찰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가습기살균
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관
련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2년-
= <u></u>
·
두 차례에 한
정하여 활동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
제15조(위원회의 정원) ①
150명

<u><삭 제></u>

요건, 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생 략) <신 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 ⑨ |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 ④ 18조(사무처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 로 정한다.
 -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 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 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 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 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 · 외교 · 대북관계 <신 설>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 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 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 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

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 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 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 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을 받 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기관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을 지명하고, 공 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 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 설>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 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② ~ ① (생 략)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1 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_ 제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설 립준비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각각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제483	조(종	합년	보고서	의	작성]과	제
출	등)	1					
						<u>6</u> 7]	<u>월</u>

② ~ ① (현행과 같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 •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 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

② (생략)<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 일체의 사본을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 회적참사자료 일체의 사본을 각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 여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송부의 주체, 시기, 방법 및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 다.
-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 일체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u>야 한다.</u>